

#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암환자 의료비지원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삼척시, 영월군

내 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복지부 지침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년도부터 최대 연속 3년까지 연간 정액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는 [표 1]과 같이 성인 폐암 환자 의료비 정액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최대 연속 3개년을 초과하여 지원 상한금액(100만원)을 초과하였다.

[표 1] 폐암환자 지원기간·금액 상한 초과 의료비 지원 현황

(단위 : 원)

시/군	지원년도	성 명	생년월일	병명	지원일자	정액지원금액	비고
계						4,000,000	지원상한금액 초과(1,000,000)
영월군	2012	○○○	620419	폐 암	2013.02.14	1,000,000	
	2013	○○○	620419	폐 암	2013.02.14	1,000,000	
	2014	○○○	620419	폐 암	2015.04.21	1,000,000	
	2015	○○○	620419	폐 암	2015.04.21	1,000,000	

또한 ,보건복지부지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기 전에 긴급의료지원사업의 암환자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상한금액에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긴급지원사업의 의료지원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삼척시에서는 [표 2]와 같이 ○○○에 대하여 긴급지원사업의 의료지원금을 공제하지 않고 폐암환자 정액지원금 1,000,00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표 2] 긴급의료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중복 지원 현황

(단위 : 원)

시/군	성명	생년 월일	병명	구분	지원일자	급여	비급여	소급내역	진료비 발생연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중복지급액
삼척시	○○○	000000	위의약성 신약물	긴급의료 지	2013-01-23	367,380	1,594,570	-	2013	정액지원 1,000,000
			폐 암	긴급의료 지	2013-07-30	468,050	1,664,440	-		
			폐 암	암 환 자 의 료 비	2014-01-09	-	-	2013년 정액지원: 1,000,000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에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한 1,000,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삼척시장은

○○○에게 중복으로 지원한 1,000,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